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54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1일당 200만원’에서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2천만원)’로 보다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u>200만원 이하의</u>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u> ----- --. <u>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동의를결 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임.

- 동의를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에 각각 규정됨.

□ 동의를결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널리 도입하여 운용 중임.

-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동의 명령(Consent Order),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DOJ)의 동의판결(Consent decree)의 집행제도를 두고 있고,¹⁾ EU는 미국의 동의 명령 제도를 모델로 하여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동의심결이라는 명칭으로 운용 중임.

□ 동의를결은 위법성 입증 절차 등을 생략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간

1) 우리나라의 동의를결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에 해당함.

소화를 도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제한 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함으로써 효과적인 법 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동의의결은 피조사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과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된 후에 이를 의결할 수 있음.²⁾

따라서 동의의결 후에는 그 이행 여부가 중요하므로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³⁾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음.⁴⁾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2) 제89조(동의의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3)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동의의결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2년 2월 애플코리아가 1일 동안 미이행하여 2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이 유일함.
- 4)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동의의결의 이행 담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동의의결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제재금은 우리나라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됨.

- 먼저, 미국의 경우 FTC와 DOJ의 동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연방 거래위원회법 등에 근거하여 1일 최대 53,088달러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⁵⁾

- 다음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화해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서 전년도 평균 일일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함.⁶⁾

- 한편, 일본은 동의심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대신 동의심결을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⁷⁾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먼저, 글로벌 정합성의 측면임.

5)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I) 등에 따라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매일 민사제재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민사제재금은 ‘연방민사제재금 인플레이션 조정법’에 따라 매년 1월 15일 기준으로 갱신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행정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 명시됨. 16 CFR § 1.98에서 규정하는 2026년 기준 민사제재금의 한도는 53,088달러임.

6) EU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Article 24, 1(C)

7)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

현행법상 1일 200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대규모 자산총액을 보유한 거대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행위를 억제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음.

특히 미국·EU가 위반행위의 지속 기간에 비례하여 큰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매출액에 연동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재정적 압박 수단을 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제재 수준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봄.

- 다음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임.

동의의결 제도의 본질이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적인 피해보상의 균형에 있는 만큼,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확약한 시정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불이행에 수반하는 재정적 리스크를 실효적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발적 이행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법 집행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도 현행 이행강제금은 2011년 도입 이래 상향된 바 없고, 정률 방식의 부과 규정이 없어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임.

□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각각 동의를결과 이행강제금(1일 200만원
한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도 함께 개정을 추진하여
규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